

의안번호	2217588
의 퇴 인	이원택의원
회 답 일	2026. 5. 13.
추 계 번호	26B151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2인 관서 별정우체국에 배치할 사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97억 8,200만원(연평균 59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및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 (안 제8조제3항)	5,601	5,773	5,951	6,134	6,323	29,782	5,956

주: 2026년 3월 기준 2인 관서로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별로 직원 1명(사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신규채용 직원의 수 및 급여액, 2인 관서 별정우체국의 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직원의 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제3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13조의2(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직원의 채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13조의2(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내용·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2025년말 기준 전국 별정우체국 수는 672개이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별정우체국 수는 395개임 [별정우체국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개) <table><tr><th></th><th>경인청</th><th>부산청</th><th>충청청</th><th>전남청</th><th>경북청</th><th>전북청</th><th>강원청</th><th>제주청</th><th>합계</th></tr><tr><td>전체</td><td>79</td><td>115</td><td>118</td><td>116</td><td>118</td><td>94</td><td>31</td><td>1</td><td>672</td></tr><tr><td>인구감소 지역 내</td><td>14</td><td>66</td><td>65</td><td>81</td><td>75</td><td>74</td><td>20</td><td>—</td><td>395</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경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합계	전체	79	115	118	116	118	94	31	1	672	인구감소 지역 내	14	66	65	81	75	74	20	—	395
	경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합계																								
전체	79	115	118	116	118	94	31	1	672																								
인구감소 지역 내	14	66	65	81	75	74	20	—	395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과
별정우체국연금의 국가부담금 요율 적용

- 다만, 별정우체국 직원¹⁾은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²⁾되며,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하므로, 공무원·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 부담 요율 중 ‘산재보
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과 별정우체국연금의 국가부담금 요
율(9%)을 적용함

[표 2] 별정우체국 직원 신규 채용 관련 임금상승률 및 기관부담 요율 전망

(단위: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비 고
공무원임금상승률		3.5	3.0	3.0	3.0	3.0	3.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신규채용 기관부담 요율	별정우체국 연금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별정우체국연금의 국가부담금 요율
	산재보험	1.470	1.470	1.470	1.470	1.470	1.47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건강보험	3.595	3.646	3.699	3.775	3.852	3.932	
	노인장기 요양보험	0.471	0.483	0.495	0.511	0.527	0.544	
	합 계	14.536	14.599	14.664	14.756	14.849	14.946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는 2026년 3월 기준 2인 관서(국장 및 사무
직원 1인)로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별로 직원 1명(사무원)을 신규 채용
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별정우체국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

2)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안 제8조제3항)

○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것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직원 중 사무직원(사무원 직종)이 우편업무 및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무직원은 사무장·사무주임·사무원으로 구분되며, 사무장은 우정 7급, 사무주임은 우정 8급, 사무원은 우정 9급 국가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고 있음

[표 3] 별정우체국 사무원의 보수 기준

구 분		보 수
사무직원	사무장	우정 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 상당액
	사무주임	우정 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 상당액
	사무원	우정 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 상당액

자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4]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는 2인 관서(국장 및 사무직원 1인)로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별로 직원 1명(사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추계함

- － 이 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과 별정우체국연금의 국가부담금 요율 적용

○ (2인 관서 별정우체국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말 기준 2인 관서 별정우체국의 수는 총 133개임

○ (별정우체국 사무직원 평균 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별정우체국 사무원의 평균 보수는 3,568만원임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2인 관서 별정우체국에 배치할 사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97억 8,200만원(연평균 59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신규채용 사무원 수(A, 명)	133	133	133	133	133	—	—
급여(B, 만원)	3,675	3,785	3,899	4,016	4,136	—	—
기관부담요율(C, %) ¹⁾	114.599	114.664	114.756	114.849	114.946	—	—
소계(D=A×B×C, 백만원)	5,601	5,773	5,951	6,134	6,323	29,782	5,956

주: 1) 기관부담요율은 급여분에 공무원·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 부담 요율 중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과 별정우체국연금의 국가부담금 요율(9%)을 더한 수치임

2) 2026년 3월 기준 2인 관서로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별로 직원 1명(사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신규채용 직원의 수 및 급여액, 2인 관서 별정우체국의 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2026년 3월 기준 2인 관서로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별로 직원 1명(사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신규채용 직원의 수 및 급여액, 2인 관서 별정우체국의 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